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7.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6월 18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07. 7. 2)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 광 우)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경감 규정의 신설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의 소유주택(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면토록 한 종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

다)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감면 목적상 합리적으로 조정함
(안 제14조).

- 감면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서식을 신설함 (안 제23조).
- 종전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일을 2007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함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